전과 관련 규정

[학칙 제21조]

제21조 (전과)
① 전과는 학과별 입학정원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1998.3.1., 2016.5.1.)
② 전과를 허용하는 학과의 범위와 전과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학사규정 제50조 ~ 제52조의 2]

제50조 (전과의 시기 및 선발)
① 전과는 2학기 이상 6학기 미만 재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8.3.1., 2012.3.1., 2016.3.9.)
② 전과의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과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1998.3.1., 개정 2012.3.1.)
제51조 (범위)
① 학과(학부) 및 전출·입 인원의 범위는 전과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1998.3.1., 2012.3.1.)
② 야간학과(학부)에서 주간학과(학부)로의 전과는 할 수 없다. (개정 1999.3.1.)
제52조 (절차) 전과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과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1999.3.1., 2012.3.1., 2016.3.6.)
제52조의 2 (교육과정 이수)
전과한 자는 전입학과(학부)의 교육과정을 이수학과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1998.3.1., 2012.3.1.)

[전과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21조 및 학사규정 제11장에 의하여 전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과는 학생이 재학 중에 소속 학과(학부, 이하 생략한다)를 변경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시기) 전과 전형은 매학기 실시한다.(개정 2013.3.1., 2016.6.1.)
제4조(자격) ① 전과신청 필요학점 및 성적평균평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1., 2014.1.1., 2016.6.1., 2017.3.1)
1. 1학년 2학기 신청자는 교양과목 12학점 이상을 이수 및 성적평점평균 2.00 이상(신설 2016.6.1.)(개정 2017.3.1.)
2.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신청자는 제1호 이수학점 외에 원 소속학과 전공과목 9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 및 성적평점평균 2.00 이상(신설 2016.6.1.)(개정 2017.3.1.)
3. 편입학한 학생은 원 소속학과 전공과목 3학점 이상 이수(신설 2017.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체능실적우수자, 공로S 장학생, 재직자 전형 입학생, 의료인력양성편입생은 전과를 지원할 수 없다.(신설 2012.3.1.)(개정 2016.6.1., 2017.3.1.)
③ (삭제 2016.6.1.)
④ (삭제 2017.3.1.)
⑤ 전출학과에서는 별도의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⑥ 제4조 제1항 각 호의 이수학점은 전과 신청 전 수강 중인 학점을 포함한다.(신설 2016.6.1.)
제5조(허용범위) ① 학과별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30%이내의 범위에서 전입을 허용하며, 전출학과와 그 범위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신설학과(부)는 학과가 신설된 학년도의 신입학자부터 전입을 허용하되, 허용학과

(부)는 따로 정한다. 계열 입학생이 있는 경우, 2023학년도 학과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전입 허용인원을 산출한다.(개정 2013.3.1., 2016.6.1., 2017.3.1., 2024.10.22.)

② 간호학과 및 사범대학 학과의 허용범위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모집단위별 정원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3.3.1., 2016.6.1.)

1. 삭제(2013.3.1.)
2. 삭제(2013.3.1.)

③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신설 2016.6.1.)

제6조(신청 및 선발) ①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전과신청서, 유효기간 만료 전의 공인영어 성적(토익,iBT토플,텝스 중 택 1), 성적증명서를 학사운영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1.,2019.12.26)

② 교무처에서는 전과지원자 명단을 학생 전입희망학과에 통보한다.(개정 2013.3.1.)

③ (삭제 2016.6.1.)

④ (삭제 2016.6.1.)

1. (삭제 2016.6.1.)
2. (삭제 2016.6.1.)
3. (삭제 2016.6.1.)

⑤ (삭제 2016.6.1.)

⑥ (삭제 2016.6.1.)

⑦ 전과지원자 인원수가 전과선발예정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자가 제출한 공인영어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높은 자로 선발하되, 공인영어 성적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성적평점평균이 높은 자, 취득학점이 많은 자의 순으로 선발한다.(개정 2016.6.1.)

⑧ 전과 신청 후 소정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개정 2016.6.1.)

⑨ 전과 신청 학기의 성적 이관 후, 지원 자격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한다.(신설 2024.4.24.)

제7조(학적) ① 합격자의 소속학과는 전과합격 직후 학기의 개시일부터 변동되며 소속변경된 각종 증명서 및 학생증 발급은 전과합격 직후 학기의 개시일부터 가능하다.(개정 2016.6.1.)

② 합격자의 학번은 변동되지 않으며 모든 개인 학적사항은 전입학과로 이전된다.

③ 전과 전 재학기간은 재학년한에 포함된다.

④ 삭제(2013.3.1.)

제8조(이수과정) ① 전과한 학생은 본인의 입학학년도에 따라 전입한 학과의 교육과정 및 졸업요건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입학자의 경우는 당해 학년이 적용받는 졸업요건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3.3.1.)

② 전과한 학생이 전과 전에 이수한 전출학과의 전공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하고, 일반선택으로 이수한 전입학과의 전공과목은 전입학과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13.3.1.)

③ 삭제(2013.3.1.)

④ 전과한 학생은 전출학과의 전공을 부·복수전공으로 신청해서 선발되어야 이수할 수 있다.

⑤ 사범계 학생이 비사범계 학과로 전과할 경우 교직이수를 신청해서 선발되어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제9조(등록) ① 전과한 학생의 등록금은 전입학과의 등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과로 인하여 등록금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을 추가납부하거나 환불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 ① 전과한 학생은 전입 학기의 모든 장학금 수혜 자격을 유지한다.

② 입학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전과할 경우는 해당 장학금의 수혜 자격을 유지한다.

제11조(포기) 합격자가 전과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포기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1.,2016.6.1.)

제12조(보칙)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관계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12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